



연 수 구 보 건 소



수신 관내 의료기관 464개소 귀하
(경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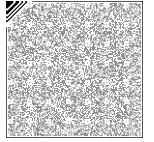
제목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

1.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아동복지법」 제26조제3항에 따라 **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*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**
 - *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
 - 제11호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**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**(응급 의료기관,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)
 - 제15호 :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**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**(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) 및 **의료기사**(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치과위생사 등)
 - 제17호 : **정신의료기관은 의료인,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포함**
3.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2023.12.31.까지 이수하신 후, 교육이수 결과를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**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에서 교육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(1차: 150만원, 2차: 300만원)

< 교육 내용 및 방법 >

- **교육이수기간** : 2023.1.1. ~ 2023.12.31.까지 1시간 이상
- **교육내용** :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등
- **교육방법** : 강사(필수 자격 요건 충족)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(동영상)을 활용하여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
 - **인터넷강의**: 서울시 평생학습포털(sll.seoul.go.kr), 경기도 지식(gseek.kr)
 - **집합교육**: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 교재(아동권리보장원: <https://iedu.ncrc.or.kr> → 알림마당 → 자료실)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
- ★ **제출방법** : 보건소 홈페이지 > 관내 의료기관 > “의료기관 전용” 게시판에 글 등록
 - **제목** :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(의료기관명) 반드시 준수
- **제출내용**: 교육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[붙임] 양식 참고 *보건소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가능
 - *증빙자료 - [인터넷강의] 수료증, [집합교육/시청각] 교육사진 및 출석부, [집합교육/강사] 강사프로필(자격기준검증), 교육사진 및 출석부

붙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. 끝.



연수구보건소장



주무관 **하윤경** 의약물관리담당 **성은주** 보건행정과장 전결 2023. 5. 16.
박계정

협조자

시행 보건행정과-7598 (2023. 5. 16.) 접수

우 2191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 13, (청학동, 연수보건소) / <http://www.yeonsu.go.kr>

전화번호 032-749-8042 팩스번호 032-749-8049 / tingeryun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소통의 연수, 통합의 연수, 안전한 연수